

수 신 분회장

(경유) 사무국장

제 목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련 회원 안내 요청

1. 한의학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2. 관련근거 : 대한의-2019-04-0228(2019.4.17) 동제목

3. 상기근거와 같이 중앙회로부터 추나요법 급여실시와 관련하여 ‘건강보험 추나요법 모니

터링 실시’와 ‘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청구 관련 유의사항’을 접수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귀 분회 소속회원님들께서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첨부 : 1. 건강보험 추나요법 모니터링 실시 관련 안내문 1부.

 2.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1부. 끝.



서 울 특 별 시 한 의 사 회 장

담당 과장 부장 윤상환 국장 김태준 처장 김석모 협조

서한의 – 제 26 호 (2019.04.18.)

우)0256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 (421호) / 홈페이지 : http://www.skma.or.kr

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: (대)02-960-0811 / 팩스 02-6944-8075 / E-mail : skma@skma.or.kr / 공개여부

□ 첨부 1.

**건강보험 추나요법 모니터링 실시 관련 안내**

○ 보건복지부(건강보험심사평가원)의 건강보험 추나요법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아 래 -

**□ 건강보험 추나요법 모니터링**

○ 복지부(심평원)에서는 건강보험 추나요법에 대한 모니터링(2년)을 통해 급여 기준, 수가 조정 등의

검토 및 제도 보완 추진 예정.

\* 관련근거 : ‘18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’18.11.29.)

○ 이에, 심평원에서는 건강보험 추나요법의 실시 경향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중.

**□ 회원 협조 요청 사항**

○ 행위정의를 참고한 적정 추나요법 시행

-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은 표준화된 시술이 요구되는 급여 행위이며, 행위정의를 기반으로 의사

업무량, 진료비용, 위험도를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가 산출되었으므로, 행위정의를 참고한 적정 추나요법 시행.

\*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 기준(급여대상 질환, 수진자당 횟수제한, 시술자당 인원제한, 요양

병원 급여제한) 및 상대가치점수 등이 재검토될 수 있음.

\* 다만, 행위정의 상의 ‘시술시간’은 전형적인 시술시간으로, 시술자의 숙련도나 환자의 상태 등에

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목적이 달성된 경우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시술을 종료할 수 있음.

☞ 행위정의 상의 시술시간은 추나요법을 실시하기 위한 환자교육, 사진 및 이학적 검사를 통한

 환자상태 확인(시술 전), 추나요법 실시(시술 중), 실시 후 환자상태 관찰, 주변 정리정돈(시술 후)

등 추나요법 실시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소요된 시간을 의미함.

○ 진료기록부 작성

- 추나요법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며, 진료기록부는 적절한 청구

의 근거로 활용되므로, 관련 내용(환자의 증상, 시술 부위, 활용기법, 시술 후 환자 반응 등)을 가급적 상세히 기록하되 제3자가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.

\*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을 진단한 근거로서, 임상양상, 신체검사 소견, 영상자료 소견 등을 기록.

\* 추나요법 치료부위 기록(해당 근육이나 관절 또는 두경부, 상지부, 흉요추부, 골반부, 하지부 중 치료부위)

\* 적용 추나기법 기록(세부 적용기법 또는 근막추나, 관절가동추나, 관절신연추나, 관절교정추나, 탈구추나

중 해당 유형 기록)

※ 심평원 관련 공문









□ 첨부 2.

**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**

○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청구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진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아 래 -

**□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 전송**

○ ‘19.4.8. 진료분부터, 추나요법 실시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

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함.

○ 추나요법 진료수가 청구 시 **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해당 진료정보가 전송되어 있는 경우에만**

 **급여 적용**.

- ‘요양기관기호, 환자 주민등록번호, 진료일자, 한의사 면허번호, 수가코드’ 항목에 대해, **청구명**

**세서와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의 진료정보가 완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조정**.

**□ JJ007(줄번호 단위 특정내역) 기재**

○ ‘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(한의협 주관)’을 이수하고 심평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실시한

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으로 산정.

- 추나요법 청구 시 **JJ007(줄번호 단위 특정내역, 면허종별 및 면허번호 등)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,**

**추나요법 산정 가능 한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심사 조정**.

※ 「국토부 행정해석(자동차운영보험과-2115호) 관련 Q&A-‘19.4.9.」에 따라, JJ007 기재

항목(추나요법 실시 한의사 면허종류, 면허번호, 실시일자 및 시간) 중 **’실시시간‘의 경우 시술 전·중·후를 포괄하는 실시시간을 기재하되, 환자의 재원시간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**.

※ 또한, 협회에서 기 안내드린 내용과 같이 **‘실시시간 기재 여부와 심사는 전혀 무관’한 것으로**

**심평원과 협의된 바, ‘실시시간(또는 재원시간)’을 기재하지** **않으셔도 무방하며, 추후**

**확정될 관련 고시에서는 ‘실시시간 기재’ 조항을 삭제하기로 국토부와 합의됨**.

※ 다만, JJ007(줄번호 단위 특정내역) 기재항목 중 **‘추나요법 실시 한의사의 면허종별 및 면허**

**번호’는 반드시 기재**하여야 함.

\* 관련 안내문 :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국토부 행정해석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항 안내(협회 홈페이지 >

 알림마당 > 협회공지사항 334번 게시글)

**□ MT055(명일련 단위 특정내역) 기재**

○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은 월평균(또는 주평균) 1일 18명까지 인정

가능.

- 추나요법 청구 시 **MT055(명일련 단위 특정내역,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)를 기재하지**

**않은 경우,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지급 지연**.

**□ 회원 유의사항**

○ **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실시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를 전송하고,**

**청구 시 특정내역(JJ007, MT055)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**.

-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**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전에, 해당 특정내역의 기재 여부 확인 요망**.

※ ‘한의맥’의 경우, JJ007(실시시간기재 제외), MT055 기재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있으나,

청구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요망.

※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청구명세서 점검 결과, 청구명세서와

추나요법관리시스템의 진료정보 불일치 및 JJ007, MT055 미기재 명세서 다수 확인.